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6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0. 12. 16.(수) 10:33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김 현 부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6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33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0년도 제6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67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68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4건과 <보고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21~'22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건 (2020-69-310)

○ 한상혁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21~'22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21~'22년도 공익채널 선정 대상과 조건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대상과 권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입니다. 공익채널 선정입니다. 공익성 방송 분야별로 고득점 순으로, 사회 복지 분야 3개 채널, 과학·문화 진흥 분야 2개 채널, 교육 및 지역 분야 3개 채널로 총 8개 채널을 선정하고 심사위원회 전체 동의로 선정 건의한 MBCNET을 추가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사회 복지 분야는 한국직업방송, 다문화TV, 소상공인방송, 과학·문화 진흥 분야는 아리랑TV, 사이언스TV, 교육 및 지역 분야는 EBS 플러스1, EBS English, EBS 플러스2, MBCNET이 되겠습니다. 다문화TV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선정 조건을 부가합니다. 선정조건(안)입니다. 채널 성격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시킬 것과 UHD로의 화질개선 계획을 위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입니다. 복지TV를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권고사항을 부가한다입니다. 권고사항(안)은 프로그램의 화질을 높이는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노력할 것과 장애인이 선호하는 최신 일반프로그램을 수급해 화면해설, 수어제작 등을 통해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장애인 고용비율이 낮으므로 장애인복지 전문채널로서 장애인 고용비율을 공공

기관의 법적의무 비율 이상으로 높여 채널 차별성을 높일 것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 제70조제3항,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의2에 따라 '21~'22년도 공익채널 선정 대상과 선정 조건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대상과 인정 권고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지난 8월 10일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공고를 했고, 10월 5일 신청서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공익채널 분야입니다. 선정기준 및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총점의 65% 이상, 심사사항별 배점의 40% 이상을 획득한 채널 중 공익성 방송분야별로 고득점 순으로 사회 복지 분야 3개 채널, 과학·문화 진흥 분야 2개 채널, 교육 및 지역 분야 3개 채널 등 총 8개 채널을 선정하고 MBCNET은 심사위원 전원 동의로 추가 선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심사결과는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정책건의사항입니다. 지역분야를 과학·문화 또는 사회 복지 분야, 예를 들면 소수어의 대변 등으로 재분류하여 실질적인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타 사업자와의 기존 사업 실적을 동일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송출한 PP로 신청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채널입니다. 인정기준 및 심사 결과는 심사결과 총점의 70% 이상, 심사사항별 배점의 60% 이상 획득한 채널의 복지TV를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정책건의사항입니다. 일반 PP 채널의 평가 항목과 차별화된 장애인 채널 평가에 특화된 평가 항목 및 배점의 조정이나 개발이 요구된다는 의견과 장애인방송을 하는 사업자가 1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장애인 채널 인정 제도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특혜일 수 있으므로 장애인채널 제도와 공공채널 제도를 통합하는 제도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공익채널 분야입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추가선정건의를 존중하여 공익성 방송분야별로 사회 복지분야 3개 채널, 과학·문화 진흥분야 2개 채널, 교육·지역분야 4개 채널로 총 9개 채널을 선정하고, 다문화TV에 대해서는 선정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복지채널 분야입니다.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복지TV를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하고 심사위원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권고사항을 부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책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기타 심사위원회의 정책건의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고시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12월 중에 공익채널 선정서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서를 교부하고 분기별로 운영 실적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셨던 김효재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이번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으로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제도는 각각 2006년과 2013년부터 운영되어 온 제도로 그동안 방송의 공익성 제고와 사회적 소수자의 복지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해 온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18년까지는 1년마다 선정해 왔으나 2018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효기간이 2년으로 늘었고, 기존에는 위원회 의결로 심사계획을

마련해 진행하던 것을 2018년부터는 심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심사는 고시에 따른 두 번째 심사로서 공익채널은 6인, 장애인복지채널은 7인의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공익채널로서의 채널 적합성, 계획 대비 실적 및 재무 건전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서면 의견청취를 통해 각 신청채널별로 방송에 대한 의지와 미흡한 사항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사위원회는 오늘 보고받은 바와 같은 결정을 하였고, 추가로 심사평가 결과 고득점을 받았고 지역이라는 공익성 분야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MBCNET을 심사위원 전원의 동의로서 추가 선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밖에 2018년도 당시 제출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채널과 공익채널로서 방송실적이 없어 심사평가 기준점수에 미달한 채널은 추가 선정을 건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익성 취지에는 부합하지만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탈락한 채널이 있다는 점은 심사위원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상 엄격한 심사를 통해 공익적인 내용을 제대로 방송할 수 있는 채널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는 시청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제 개인적인 무거운 마음으로 한 가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육아채널이 공익채널로 선정되었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드렸던 보고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공익채널 선정제도는 방통위가 공익채널로 선정해서 공표하면 방송사업자들이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에게 판매할 때 공익채널 가운데 한 채널은 반드시 끼워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일종의 공익적인 성격의 공익방송 프로그램 육성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번 심사 대상 가운데 하나의 채널이었던 육아방송이 심사에서 탈락하여 공익채널로 선정되지 못한 것입니다. 육아 문제는 곧 출산 문제이고,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국가적 해결 과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육아채널 같은 방송은 어쩌면 국가가 담당해서 해야 할 문제인데 이를 민간영역이 담당하고 있다는 데 국가기관으로서 그 일을 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부채 의식까지 갖고 있어야 하는 문제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 방송사업자가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공익채널 선정 탈락 결정을 하면서 이런 사업자를 지원하고 격려는 하지 못할망정 국가가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 또한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 사업자가 그동안 수행한 사업과 지난 2018년 사업 재승인을 받으면서 그로부터 2년 동안 수행하겠다고 방통위에 제출한 사업수행 약속의 이행실적이 매우 미흡하고 무엇보다 재무건전성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해 심사위원 전원이 이 상태로는 채널 성격에 어울리는 사업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번의 경우 공익채널 선정 재승인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저출산 문제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도전과제이고, 따라서 육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방송은 어쩌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현 상황이 민간 영역에 맡겨져 있다면 국가가 이들 방송사업자들을 도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계기를 만들 해법은 없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육아채널 선정 탈락을 계기로 한 번 우리 방통위가 이들 육아 전문방송을 지원할 수 길은 없는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심사결과가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 제도의 취지와 방송의 공익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심사위원장이셨던 김효재 위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하나 질의 내용입니다. “장애인방송을 하는 사업자가 1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장애인채널 인정제도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특혜일 수 있으므로 장애인채널 제도와 공공채널 제도를 통합하는 제도 개선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심사위원회에서 정책건의를 했는데 특혜일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진행되는 복지TV가 제대로 방송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다른 영역에 있는 제도와 통합이 더 중요하다, 의미 있다고 보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심사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고시가 장애인복지채널 또한 3개 이내의 채널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1개 채널밖에 없고 신청이 1개 채널만 들어오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안한 것입니다. 공공채널 제도는 공익채널과 공공채널, 장애인복지채널 전체적으로 한 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정책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그러면 공익채널과 공공채널에 대한 선정의 과정에 승인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이 지적이 지난번에 양 국장님이 제안했던 그런 차원의 의미입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방송법에는 말씀하신 대로 크게 공공채널, 공익채널, 장애인복지채널 그리고 종교채널까지 의무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채널은 그 분야가 아예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공익채널은 분야를 방통위가 정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존재하는 장애인채널은 1개밖에 없어서 1개가 들어 왔는데 심사위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한 사업자만 계속하니까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공익채널에 붙여서 공익채널의 한 분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공익채널 제도나 공공채널 제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전체 공공·공익채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심사위원이 제안한 것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앞서 김효재 위원님께서 심사위원장을 맡아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육아방송이 총점이

650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위채널 3개 이내'라는 고시 규정과 육아방송이 그동안 운영하면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지적되면서 어쨌든 순위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어저께 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내놓았는데 역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고시 때문에 육아방송을 공익채널로 할 수 없는 그런 모순되는 상황에 봉착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고시 개정이 필요한 점은 손질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채널이라는 분야가 사회복지, 과학·문화 진흥, 교육 및 지역 3개 분야에 장애인복지채널까지 공익성과 공공성을 강화시키자는 취지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과학·문화 진흥 분야에서 특히 문화 분야에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아리랑 TV와 YTN의 사이언스TV는 기존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평가에서 반영됐고, 토마토티브이는 토마토클래식이라는 신규 방송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사업실적이 없음으로 인해 3개 이내에서 610점의 점수를 받아 탈락 됐습니다. 이 부분 역시 공익채널은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개정할 여지가 없는지에 대해 사무처에서 살펴보고, 내년에는 보다 많은 공익채널이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먼저 심사위원장이신 김효재 위원님, 심사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께서 제기한 정책건의사항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분류를 다시 한번 해 보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 이 정책건의사항들을 적극 검토해서 향후 제도개선 등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이번에 심사위원회를 운영해 주신 김효재 위원님 고생 많이 하였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공익채널과 인정된 장애인채널은 향후 2년 동안 플랫폼 사업자들로부터 의무재송신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이들 중에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소상공인방송이 새롭게 진입하였고, 나머지는 2년 전에도 선정되거나 인정된 사업자인데 일부 채널에서 화질 개선이나 편성비율 상향 등의 조건이나 권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공익성 제고라는 공익채널, 장애인복지채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각 채널들은 조건과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필요시 자구책을 마련하여 실천해 주시기를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네 분 모두 원안에 동의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말씀 중에 제도 자체에 대한 재설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IPTV가 되면서 채널이 다채널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감안하고 심사위원회 정책건의 의견을 종합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건 (2020-69-311)

○ 한상혁 위원장

- 다음은 <의결안건 나>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승한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 주문입니다. (주)한국무역정보통신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고, 아래의 지정조건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정조건은 크게 3가지 항목으로 첫 번째, 본인확인업무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선필요사항을 개선하고 그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행결과를 확인하여 개선이 완료된 경우 ‘본인확인기관지정서’를 교부하며, 기관은 지정서를 교부받은 시점부터 본인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본인확인기관 지정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제9조의5, 제15조 및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등을 포함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고, 세 번째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후에도 본인확인업무의 안정성 및 신뢰성 유지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며, 관리 결과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기관의 본인확인기관 지정 의제 근거가 사라짐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었던 (주)한국무역정보통신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서 기반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경과사항입니다. 올해 6월 9일 과기정통부에서 공인인증제도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공포가 되었고, 12월 10일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22일에 (주)한국무역정보통신은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서를 방통위에 제출하였습니다. 신청기관 일반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국무역정보통신에 대해서 9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신청기관 대상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7일에는 신청기관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정보보호 등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하였으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심사대상 법인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개발·제공·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총 17개 세부심사기준과 고시에서 정한 총 92개 항목의 평가기준에 대해서 근거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항목은 크게 3가지로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 운영과 접속정보 위·변조 방지 등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과 보안설비, 재난방지 설비 등 설비규모의 적정성, 정보보호 분야 전문기술 인력 확보 및 자본금 80억 원 이상 확보 등 기술적·재정적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한국무역정보통신은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을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개선이 필요한 항목의 경우 평가기준 항목에 대한 미비 정도가 중대하지 않거나 빠른 시일 내 보완조치가 가능한 사안으로, 적절한 개선조치 완료 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입니다. 개선 필요사항을 포함한 한국무역정보통신 심사결과 주요내용은 <표>에 적시된 내용과 같으며, 조치예정에 적시된 일정은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제출한 일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한국무역정보통신은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등이 일부 미흡하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 개선하거나 개선 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붙임>의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개선완료를 조건으로 지정하고, 확인 후 지정서를 교부한다는 의견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제안한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이행여부 확인을 한 후 지정서를 교부할 계획입니다. <붙임>으로는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세부내용과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관련 규정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심사결과 한국무역정보통신은 심사기준을 대체로 충족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방지,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운영·보안 등 일부 항목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자가 늦어도 내년 2월 18일까지는 미흡한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고, 또 기존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주문에서와 같이 조건을 부가하여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정서를 교부받기 전까지는 신규 본인확인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무역정보통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 의견입니다.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일단 미흡한 사항들이, 개선 필요사항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는 지적된 미흡사항들을 하루빨리 잘 보완해서 안정적인 본인확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사무처에서 중요한 것은 사후점검, 또 정기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확인서비스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사후점검을 적극적으로 면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신승한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9월 22일 한국무역정보통신, 네이버, 카카오, 토스 4개 업체에서 본인확인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한국무역정보통신만 심사가 완료되었고 일단 본인확인기관으로 조건을 붙여서 가능하다고 되었는데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 **신승한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법적인 심사기한은 90일로서 심사기한 일정은 내년도 2월 초순까지입니다. 한국무역정보통신에 대해서는 심사가 거의 끝났고, 개선 완료사항만 지적됐고, 나머지 3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어서 심사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께 이런 안건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심사가 마냥 미루어질 수 없는 것이니까 언제까지 계획하고 있고, 보고가 언제 될 것인지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승한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지금 법정 심사기한은 90일이어서 지정 신청을 저희에게 한 날이 9월 22일입니다. 기한은 내년도 2월 2일까지인데 지금 보안에 관하여 확인할 부분이 남아 있어서 최대한 빨리 심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3개 기관도 본인확인기관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고, 오늘 더 심사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잘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원안 동의를 하겠습니다.
- **신승한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머지 네이버, 카카오, 토스 기관은 저희에게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공인인증서가 올해 폐지되어서 '공인'자가 없어지고 전자서명사업자가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에 신청을 해서 그런 지위를 획득할 것으로 많은 언론기사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 쪽 본인확인기관에 대해서는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따로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네이버, 카카오, 토스의 문제는 결국 주민등록번호를 관리할 기술적 능력이 있는가, 그 이야기인 것이지요?

○ 신승한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본인확인기관 지정은 방통위에서 하고, 기존 공인인증기관은 과기정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본인확인기관이라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대체수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제공하는 자를 방통위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기존 본인확인기관이 휴대폰과 신용평가사인데 휴대폰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휴대폰번호를 제공하고 있고, 카드사는 카드번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인인증기관들은 의제 조항에서 인증서 기반의 대체수단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것이 이제 '공인'자가 없어지고 전자서명사업자가 되면서 여러 가지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번호를 다루는 제한된 기관을 방통위에서 특허 성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보다도 특별히 주민등록번호를 관리할 수 있는 보안이나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 것을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결국은 기술적인 문제지요?

○ 신승한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지금 현재 세 사업자에 관해서 내년 2월 2일 이전에 더 보겠다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전문가들이 네이버, 카카오, 토스에 가서 기술이 갖추어졌는지를 보는 것이지요?

○ 신승한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심사위원회에서 보는 것은 주로 보안적인 기술적인 사항을 보는 것이고, 지정이라는 것이 강력한 특허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측면은 방통위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보도가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방통위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 구분이 사실은 굉장히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대로 잘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데 그것을 언론에게 상세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승한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고생하셨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네 분 모두 원안 동의 의견이셨는데 추가적으로 심사가 진행될 3개 사업자의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기술적 능력만 보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와의 연관성도 생각해야 하고 정책적 고려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동의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 (2020-69-312)

○ **한상혁 위원장**

- 이어서 <의결안건 다>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승한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에이케이티공간정보(주), (주)제이소프트, (주)레이컴, (주)지티에이컴, (주)휴랜, (주)블보자동차코리아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하고 아래의 허가조건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허가 조건은 관계 법령 준수와 향후 3년간 사업계획서 이행실적을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2020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제5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허가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기간 동안 에이케이티공간정보(주) 등 총 7개 법인이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허가신청법인 주요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과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재무, 영업, 기술 각 분야별 전문가 총 9명으로 구성하여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에 걸쳐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신청사업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한 후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기준으로는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에 따라서 위치정보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30점),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30점), 위치정보 보호 관련 조치계획의 적정성(40점) 등 총 100점 만점 기준에 대해서 총점 70점 이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시 적격으로 판정을 하였습니다. 점수 집계 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에이케이티공간정보(주) 등 총 6개 법인은 총점 70점 이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을 취득하여

적격으로, ㈜더컴퍼니는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으로 과락은 없었으나 총점 70점에 미달하여 부적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허가신청법인별 세부심사결과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조건으로 위치정보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의결주문과 같이 허가조건을 부과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향후계획으로 오늘 안건을 의결하여 주시면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허가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허가증을 발급하겠습니다. <붙임>으로 허가신청법인 현황과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관련 규정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특별히 의견 없고 원안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들 말씀해 주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할 사업체들이 많습니다. 개인위치정보 문제가 이번에 방역을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유의해서 보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사무처에서 사업주들에 대한 정기점검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위치정보가 자칫 잘못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해서 사무처에서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국회에서 매번 문제되었지만 위치정보와 채팅앱과의 관련성 그리고 위치정보를 수집해서 목적 외 사용하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라.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20-69-313)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라>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은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붙임1>과 같이 한다. 그리고 「방송평가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을 <붙임2>와 같이 한다’입니다. <2> 제안 이유는 양성평등 및 흡쇼핑 소비자 피해구제 제고를 위해 방송사 간부직의 성별비율과 흡쇼핑 민원 피해구제 비율을 방송평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3> 추진경과는 하단의 부분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6일 「방송평가 규칙」과 「방송평가 세부기준」 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한 이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를 진행한 결과, 한국방송협회 등에서 총 8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3쪽 <4> 주요내용 <가>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1) 양성평등 관련입니다. 현행규정에서는 방송평가 시 「여성 고용 평가」 항목에서 여성 고용 비율만 평가하며, 배점은 10점입니다. 개정내용은 방송분야의 양성평등 촉진 등을 위해 현행 「여성 고용 평가」 항목에 ‘여성 간부직 고용 비율’을 신설하는 것으로 방송사의 「여성 고용 평가」 항목 배점은 기존과 동일하게 10점으로 유지하고 ‘여성 고용 비율’ 7점, ‘여성 간부직 고용 비율’ 3점으로 배점하는 것입니다. (2) 흡쇼핑 민원 피해구제 관련입니다. 현행규정에서는 「한국소비자원 민원 평가」 항목에서 ‘한국소비자원의 구제 조치 사항 건수’를 평가하며, 배점은 30점입니다. 개정내용은 흡쇼핑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노력 유도를 위해 「한국소비자원 민원 평가」 항목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조치 건수’를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비율’로 변경하는 것이며, 배점은 30점으로 동일합니다.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안)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방송평가 세부기준』 개정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는 「방송법 시행령」,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방송평가 세부기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은 세부기준의 항목·배점 변경 및 현행화하는 것으로 먼저 여성고용과 관련하여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의 「여성 고용 평가」 항목에 ‘여성 간부직 고용비율’이 신설됨에 따라 여성간부 비율 평가에 기준·배점을 반영합니다. 소비자원 민원과 관련하여 평가척도를 ‘흡쇼핑 구제조치 건수’에서 ‘흡쇼핑 피해구제 비율’로 변경하고, 피해구제 비율에 따른 점수를 명시합니다. 공익광고 관련하여 「방송법 시행령」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고시」 개정 사항인 공익광고의 법적 개념과 의무편성 비율을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난방송 관련하여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항목 중 평가방식만 규정된 세부항목의 배점기준을 명시합니다. <5> 행정예고(안)에 대한 주요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입니다. 접수결과 한국방송협회 등 8개 기관에서 주로 「여성 고용 평가」 관련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여성 간부직 고용비율’ 평가는 방송사의 경영권·인사권에 대한 침해이며, 지역방송의 경우 여성인력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으며, 이에 대해 사무처에서는 개정안은 기존의 ‘여성 종업원 고용비율’에 대한 평가를 종업원 및 간부로 구분·평가하여 방송사의 양성평등 수준을 점검하고, 방송사의 양성평등 실천노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 5쪽 <6> 향후계획입니다.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12월 관보 게재를 거쳐 내년도 1월 1일부터 오늘 개정안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지금 현재 방송평가에 '여성 간부직 고용비율'이 10점으로 되어 있지요?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 김효재 상임위원
 - 그것을 7점, 3점으로 나누겠다는 것이지요?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간부 고용비율에 3점을 주는 것입니까?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것을 방송국들은 인사권 침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지요?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일부 방송사가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제 생각은 간부직 고용비율을 보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미루어 보면 바람직해 보이고, 이것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안해서 저희가 고시 개정을 하는 것이지요?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저도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양성평등 관련 조항의 현실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OECD, 즉 주요 선진국 가운데에서도 성별 간부직 비율을 본다면 가장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방통위가 앞장서서 현실화시킨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일부 방송사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방송사에서도 적극 이해하고 협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종업원과 종사자와 차이가 있는지 살펴 주십시오.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 **김 현 부위원장**

- 국어사전에 보면 직업으로서 일하는 경우는 '종사자'라는 표현이고, 어떤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종업원'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직업의 개념을 종사자라는 말로 통용하는데 여기에 보면 '여성 종업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느 표현이 맞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방송 평가 배점에 반영되는데 이미 올해 말로 지상파방송 또는 기타 방송에 대한 평가가 다 끝나는데 내년, 내후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내년도 방송실적부터 적용됩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내년부터 적용되면 점수가 1, 2점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그만인 정도로 실질적인 효력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 자료가 나갈 것이지요?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 **김 현 부위원장**

- 보도자료가 나갈 때 점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흐름, 양성평등과 남녀의 고용의 문제를 가지고 특히 방송에서 잘할 수 있도록 강조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시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전체 배점에 비해서 여성 간부직 고용비율 3점은 매우 미미할 수 있지만 초기에 소프트랜딩 (soft landing)하기 위해서는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위원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내년이 첫 시도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또 어떤 이야기가 더 있는지, 아마 내년에도 방송평가와 관련해서는 좀 더 연구와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로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2020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다음은 <보고안건 가> “2020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편성평가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보고사유는 등록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를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2> 추진경과입니다. '20년 7월 8일 수립된 「2020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평가절차를 진행하고, 11월 30일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심의하였습니다. <3> 평가 개요입니다. 평가 대상은 실시간 텔레비전 등록대상 PP가 운영하는 방송채널이며, 올해 91개 사업자 160개 채널이 평가에 참여하였습니다. 평가대상 기간은 201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자 구분은 사업자의 규모, 공급분야를 고려하여 나누어 평가하였습니다. '가' 그룹은 방송법상 허가·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와 계열관계에 있거나 대규모 PP가 운영하는 방송채널이고, '나' 그룹은 '가' 그룹에 속하지 않은 PP가 운영하는 방송채널입니다. 3쪽입니다. 공급분야는 PP 채널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며, 공급분야별 특성 및 예시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항목은 방송콘텐츠 제작 관련 자원·프로세서·성과 분야 14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가결과는 '가'·'나' 그룹의 공급분야(A, B, C)별로 5등급으로 구분하여 매우 우수, 우수 등으로 산출됩니다. 4쪽 <4> 평가결과입니다. '가' 그룹은 총 80개 채널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매우 우수 등급은 13개 채널로 A분야는 MBC스포츠플러스 등 2개, B분야는 캐치온1 등 8개, C분야는 투니버스 등 3개 채널이며,

우수 등급은 19개 채널로 A분야는 KBSN스포츠 등 4개, B분야는 드라마맥스 등 10개, C분야는 중화TV 등 5개 채널입니다. '가' 그룹의 공급분야별 평가결과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나' 그룹은 총 80개 채널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매우 우수 등급은 12개 채널로 A분야는 Billiards TV 등 2개, B분야는 애니원 등 5개, C분야는 이벤트TV 등 5개 채널이며, 우수 등급은 21개 채널로 A분야는 바둑TV 등 5개, B분야는 가요TV 등 8개, C 분야는 동아TV 등 8개 채널입니다. '나' 그룹의 공급분야별 평가결과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5> 향후 일정입니다. 안전을 접수해 주시면 평가결과 공표 등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가'·'나' 그룹, A·B·C분야 용어를 바꾸어야 하지 않습니까? '가'·'나' 그룹 특성으로 특정해 주고, A·B·C도 예를 들어 정보, 오락, ryddid 이렇게 해서 하지, 굳이 A·B·C라는 영어를 쓸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분류하고 특성을 반영해서 특정하지 않으면 '가' 그룹이 무엇인지, '나' 그룹이 무엇인지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설명하고 반영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인데, 또 '가' 그룹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고, '나' 그룹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지 않습니까? 업자와 방통위의 관계가 아니고, 국민과 소통한다는 것을 무엇보다 소중한 관점으로 적용해서 그룹을 특정해 주고 분야에 대한 평가도 한글로 좋은 말 많지 않습니까? 보고에서는 그렇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식의 보고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살펴보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말씀하신 내용 중 '가' 그룹, '나' 그룹 구분은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가' 그룹과 '나' 그룹 나누는 이유는 이것이 PP라고 해도 규모나 지상파나 다른 큰 방송사들과 연계되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똑같이 평가해서 하면 아무래도 이것이 제작능력 우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처음 제도 도입할 때 사업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체제 자체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됐고, 또 그동안 경험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내년 부터는 제도 전반을 한 번 돌아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제가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A·B·C분야, '가'·'나' 그룹으로 구분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렇게 평가방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부터는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A, B, C라는 부분은 A가 정보, 시사, 스포츠, B가 오락, C가 교양 정도가 되는데 이름은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단, '가·나' 그룹은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대기업인데 그것을 표현하기가 그렇고, '나' 그룹은 중소PP 그룹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가·나' 그룹으로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고민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원안 동의 의견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동의 의견에 다들 동의하셨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방통위 차원에서 우리가 제작역량평가를 위해서 많은 심사위원들이 열심히 애를 써서 평가했습니다. 160개 PP니까 굉장히 많은 PP를 심사하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 수여하는 것, 그리고 과기정통부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대상 선정할 때 평가결과를 10% 정도 활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관련 PP들이 이 제작역량평가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쓴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통위 차원에서 이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해서 이것이 제작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모티브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처에서도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관련조항을 바꾸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중요한 지적이셨던 것 같습니다. 평가가 평가를 위한 평가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 평가가 기본적으로 PP들의 제작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야 하는데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 관행적으로 유지하면서 결과가 이후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평가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결과가 역량 강화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에 초점을 맞추고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별도 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0년 제6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23분 폐회 】